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립학교 교원의 임후보를 위한 사퇴시한 폐지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0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립학교 교원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 폐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승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16.
3. 회 부 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제53조제1항제7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9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사립학교 교원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 폐지(안 제53조 제1항제7호)

개정안은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사퇴시한의 제한 없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敎員	<삭 제>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무직공무원 외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¹⁾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는 사람(제53조제1항 각 호)>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1)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개정안은 기존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²⁾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사퇴시한의 제한 없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고를 통해 교원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되고 교원의 정치 세력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각각 대립되고 있음.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2)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대표발의, 2024. 7. 16., 의안번호 제1801호)의 입법화를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이와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정당법」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안) 주요 내용>

내 용	현행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안)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허용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제외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도 허용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목적이 있는바, 교원의 권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 및 소속 (사립)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교원과의 합리적 차별성 등에 대해 이미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국민 공감대 형성 없이 개정안의 입법화는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일선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사립)교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시, 유치원, 초·중등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불안정한 학교교육 운영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